

[] 전기식
[]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신고내용	검정기관 소재지
	폐지사유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유의사항

○ 검정기관이 지정을 폐지하려면 폐지에정일 3월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